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3. 6.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6.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경제지원과장)
- 제출일자: 2023. 5. 26.
- 회부일자: 2023. 5. 26.
- 검토기간: 2023. 5. 26. ~ 5. 30.(5일간)

2. 제안이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2023. 4. 11. ~ 5. 1.):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결과: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조례 ·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설치된 이후 개최된 적이 없는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등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분쟁조정 사안 발생 시는 자체 계획수립 및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도록 하여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